

## ② 개정조문

### <지방세특례제한법>

개정 전	개정 후
제180조의2(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) ①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	제180조의2(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·부 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 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#### ■ 법률 부칙

제17조(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) 제1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